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발표

- 금융위는 12월 29일 보건복지부, 국토해양부,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함.
 - 이번 금융위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, 보험요율 체계와 대물차량보험금 합리화, 대인의료비 절감, 교통사고 줄이기, 보험사고 근절 및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됨.
- 핵심이 되었던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에는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,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개선방안,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됨.
 - 차량수리시 약정금액만 내면 되던 정액제 자기부담금 방식이 수리비용의 20%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 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.
 - 현재는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나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되며, 보험갱신시 반영하는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~20% 보험료 할증이 가능함.
 -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현재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% 할인을 해 주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%p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함.
-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보험료 인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일부 쟁점이 이번 개선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반발함.
 -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보험회사의 수익증가를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밝힘.
 - 하지만,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개선대책이 진료수가 일원화, 심사일원화, 정비업소 과잉수리 방지 등의 내용은 제외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만 포함된 보험료 인상안이라고 혹평함.

(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등, 금융위 등, 12/29)